

## 18·19세기 武官 盧尙樞의 禁養活動

김 준 형\*

- |                     |                     |
|---------------------|---------------------|
| I. 머리말              | IV. 마을 조직을 이용한 금양활동 |
| II. 주거 이동과 금양활동의 기반 | V. 封山 지정을 통한 금양활동   |
| III. 분산 수호 및 금양활동   | VI.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글은 18,19세기 善山府 출신 무관 盧尙樞의 역정을 기록한 『盧尙樞日記』를 토대로, 다방면에 걸친 그의 禁養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朔州府使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던 그는 고향을 떠나 서울이나 임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잠시 고향에 돌아와 머무는 동안에는 墳山수호나 문중 일 이외에 금양활동에도 상당한 관심을 쏟았다. 그런데 노상추와 그의 부친은 선산부 내의 여러 마을로 옮겨 거주했던 인연으로 인해 해당 마을의 금양 문제에도 간여하게 된다. 게다가 분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분산수호나 분산의 산림을 금양하는 활동도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노상추는 분산 침범을 막기 위해 각 분산에 산직을 두어 묘와 금양목을 보호하려 했다. 그의 분산에 대한 적극적인 금양활동은 여러 곳에 걸치지만,

---

\* 경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jukim@gnu.ac.kr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친의 묘가 자리한 백련동에 대한 금양활동이다. 그는 금양을 위해 분산 주위나 집 부근에 수목이나 그 씨앗을 심어 금양목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분산에서 금양한 수목이나 수초를 문중 사업이나 자신의 소용처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노상추는 마을 단위의 여러 금양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던 省谷洞의 금양활동 이외에 月鶴松稷 및 그가 별업을 조성한 白雲洞의 송계에도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 및 간접적 관련이 있는 동네의 금양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금양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사는 면 지역에 접한 華山과 冷山이라도 封山으로 지정하여 금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노상추는 1825년부터 양 산의 봉산지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 해 8월 노상추는 수령을 만나 설득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정소하게 하였다. 1826년 6월 감영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절목을 만들어 내려보냈다. 그런데 난데없이 향교가 제동을 걸고 나서 일이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다가 1828년 6월 화산냉산 골짜기를 비롯한 곳곳이 비로 인해 산사태가 나고 주민이 피해를 입자, 노상추는 다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시작한다. 면민들이 관아에 정소하여, 관에서 면민의 금양을 보장하는 문건이 내려졌다. 양 산 금양과 관련된 완의절목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노상추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주제어

盧尙樞, 禁養활동, 墳山금양, 마을 금양, 封山을 통한 금양

## I. 머리말

조선후기 산림의 수목과 柴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목을 이용한 경제적 이득의 가능성이 커지자, 양반층의 산림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특히 墳山 조성과 立案에 의한 禁養處 확보 현상이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반면에 생활을 위해 목재와 柴草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반 서민들의 작벌채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양반층 간의 대립, 양반과 서민 간의 대립이 격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반층은 자신이 확보한 금양처에 대한 금양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한다.

이런 금양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있어왔다.<sup>1)</sup> 그런데 금양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실들을 모아 분석종합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 특정 양반 인물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인물의 금양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당시 사회변화 속에서 양반층의 대응해 가는 양상의 일단을 살피는 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일례로 18, 19세기 고향인 선산도호부에서 여러 행적을 남긴 武官 출신 盧尙樞(1746~1829)의 활동을 추적하면,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역정을 기록한 『盧尙樞日記』와 여러 문서들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 일기와 문서를 매개로 일찍부터 노상추라는 인물의 관직생활, 그의 신분적 지위, 가족 내의 남녀관계, 농업경영과 새로운 마을 개척을 통한 경제적 기반 확대, 기타 일상 생활사 등 여러 가지 행적과 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sup>2)</sup> 그러나 그의 금양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아직 이

- 
- 1) 김선경,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所有權의 실태」 『東方學志』 77-78,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 ; 김선경, 「17,18세기 양반층의 山林川澤 私占과 運營」 『역사연구』 7, 역사학연구소, 2000. ; 김경숙, 「조선후기 私養山의 偷斫과 공동체적 대응」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 2) 최승희, 「朝鮮後期 兩班의 仕宦과 家勢變動」 『韓國史論』 19, 서울대 국사학과, 1988. ; 金景淑, 「조선후기 山訟과 上言·擊錘—盧尙樞家와 朴春魯家의 소송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 문숙자, 「조선후기 兩班의 일상과 家族內외의

루어지지 않았다.<sup>3)</sup>

이 글은 노상추의 금양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노상추는 무관으로서 상당 기간 고향을 떠나 있기는 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금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墳山을 중심으로 한 금양활동, 마을 단위의 조직을 통한 금양활동, 封山 지정을 통한 금양 강화활동 등으로 유형화하여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 II. 주거 이동과 금양활동의 기반

노상추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1780년 봄에 무과에 급제한다.<sup>4)</sup> 그 이후 서울에 오래 머물면서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며 관직에 진출하기를 기다리다가 1784년 무렵 內禁衛 禁軍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해 12월 첫 관직이라 할 수 있는 武兼(武臣兼宣傳官)에 오른 후에도 시위와 입직 업무에 종사하다가 1787년 6월 甲山府 鎮東權管에 임명된다.

그는 1790년 고향에 돌아와 잠깐 지내다가 1791년 1월 서울에서 五衛將으로 근무하였고, 당해 8월에 환향했다가 11월 다시 서울로 올라간 후에 이듬해 6월 다시 오위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1793년 11월에 그는 朔州府使로 임명되어 임지에 부임했다가 1795년 1월 친구 수령 교체 절차를 밟고 삭주를 떠나 서울로 돌아온다. 이후 그는 고향에 돌아와 잠시 지내다가 1796년

---

남녀관계-盧尙樞의 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8, 2006. ; 정혜은, 「조선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盧尙樞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3, 2008. ; 문숙자, 『68년의 날들, 조선의 일상사-무관 盧尙樞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너머 북스, 2009. ; 김성우, 「19세기 초반 盧尙樞의 백운동 別業 조성과정과 경영」 『역사와 현실』 78, 2010. ; 이정수, 「조선후기 盧尙樞家の 재산변동과 농업경영」 『지역과 역사』 29, 부경역사연구소, 2011.

3) 김성우의 논문(2010)에서 白雲洞 松契에 대한 간여활동과 華山の 封山 지정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언급은 일부 있지만, 전반적인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하 노상추의 관직생활은 이정수의 논문(2011) 219쪽의 <표 1>에 의거한다.

12월 오위장에 제수되어 서울로 올라간다. 1800년 12월에도 洪州鎭 營將에 임명되어 임지에서 근무한다. 그 이후 한동안은 고향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지만, 1811년 加德僉使에 임명되면서 다시 고향을 비우게 된다.

이처럼 그는 고향을 떠나 서울이나 임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잠시 고향에 돌아와 머무는 동안에는 고향의 분산수호나 문중 일에 관심을 많이 쏟았다. 금양활동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특히 실질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안착한 19세기 초반의 노년기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금양활동을 전개한다. 그의 금양활동의 범위는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난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와 그의 부친의 주거지가 자주 바뀌었다는 점과 선조의 분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노상추의 주거지 이동 문제는 이정수의 논문에서 이미 언급된 적이 있다. 그는 노상추가 1767년 상주 雲谷에서 선산부 桃開로 주거지를 옮기고, 그 이후 1778년에 다시 도개에서 華林으로 옮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이런 설명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노상추의 부친과 식솔들만 도개로 이사해서 거주한 것 같고, 노상추는 도개에 거주하지 않고 원래의 본거지인 文洞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노상추의 호구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1774년과 1777년의 호구단자에는 그의 거주지가 禿同洞面 禿同洞里로 기재 되어 있고, 1780년의 호구단자에는 道開面 華林里로 거주지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sup>6)</sup>

실제 『노상추일기』를 토대로 그의 거주지를 추적해 보면, 그가 원래 거주하던 곳은 독동동면 독동리, 그중에서도 가장 큰 마을인 문동이였다. 이곳은 노상추 직계 조상의 후손들이 밀집해 살고 있었고 주위에 여러 조상의 분묘<sup>7)</sup>와 文山廟宇(文山齋?)와 三家 家廟가 있었다.<sup>8)</sup> 문산 묘우에는 그의 5대

5) 이정수, 앞의 논문(2011), 221쪽.

6) 최승희, 앞의 논문(1988), 359~360쪽.

7) 『盧尙樞日記』 4, 1825년 8월 21일, “故因出文洞 拜佳佐山親山 入文山齋席暫話 進拜右麓先塋 止宿忠孝閣.”

조와 고조가 모셔져 있고 7대조의 別廟도 있었다. 이외에 방계 조상의 祠宇도 여러 곳이 있었던 것 같다.<sup>9)</sup> 노상추 가문의 본가도 여기에 자리잡고 있었고<sup>10)</sup> 부친도 원래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1763년 갑자기 부친이 원래 거주하던 문동에서 상주 雲谷으로 거소를 옮기게 된다.<sup>11)</sup> 이곳은 노상추의 외가가 있던 곳이다. 이 마을의 인척인 趙錫一의 옛 瓦屋家舍를 거쳐로 정한 것이다.<sup>12)</sup> 이때 노상추는 부친을 따라가지 않고 본가가 있는 문동에 계속 거주하였다. 노상추가 운곡에 머무르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주된 거주지는 문동이었다. 이 무렵 그가 문동을 중심으로 인근 古南里·省谷里의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지내고 있던 모습들은 그의 일기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sup>13)</sup>

이후 1766년에 노상추의 부친은 다시 생곡리로 거주지를 옮긴다. 손자들이 學藝에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sup>14)</sup> 사실 문동과 가까운 생곡리에는 이전부터 같은 문중 인물과 인척, 친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전해에는 생곡리에 교육을 담당할 서실도 세워지고 있었다.<sup>15)</sup> 그

8) 『盧尙樞日記』 4, 1825년 1월 4일, “朝後瞻拜文山廟宇及三家家廟.”

9) 『盧尙樞日記』 1, 1780년 4월 4일, “向夕渡江至文洞 行五代祖·高祖兩位祠廟 及七代祖松庵公別廟榮奠 瞻拜各家祀宇.”

10) 『盧尙樞日記』 1, 1763년 4월 21일, “奴輩自文洞本家來到 持奠品之行也.”

11) 『盧尙樞日記』 1, 1763년 1월 27일, “家嚴有遷動善山之心 向有雲谷之約 今乃猝定移意.”

12) 『盧尙樞日記』 1, 1763년 1월 29일, “余與表從 往觀移寓所定家宅 卽都丈趙錫一氏舊家舍瓦屋二十七間也.” ; 2월 2일, “家嚴返駕善山 余使日三洒掃新移家舍 此舍卽外代祖黔澗公初次營作云.”

13) 『盧尙樞日記』 1, 1764년 3월 12일, “是日 洞人七八人 及古南三四人·省谷二三人 會話于古南山齋.” 이때 ‘동인’은 문동 거주자를 가리킨다. 정조대의 『戶口總數』(서울대奎章閣 영인본, 1996) 274쪽에 의하면 독동동면에는 禿同里·古南里·省谷里院堂里·新基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외에 일기에는 德谷, 新山 마을이 나타난다. 독동동면에는 낙동강 서쪽 연변을 따라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신기리·덕곡·생곡리·원당리·고남리·독동리 순으로 마을이 존재하고 있었다.

14) 『盧尙樞日記』 1, 1766년 5월 24일, “大人移寓省谷 而此舉爲兒曹游藝計也.”

15) 『盧尙樞日記』 1, 1765년 9월 13일, “與古南鄭先達戚兄達新 往省谷觀書室上櫟 而都丈先到此矣 余轉往新基 還到省谷 則都丈·鄭兄先還矣.”

래서 그의 부친은 멀리 떨어진 상주 운곡보다는 친밀한 인사들이 많은 이곳에서 후손들이 기예를 닦기를 원했던 것 같다. 이후 그의 부친이 생곡 寓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자주 일기에 나타난다.<sup>16)</sup>

그러다가 1767년 3월 그의 부친은 다시 낙동강 건너편 華山 기슭에 위치한 道開面 桃開里로 이사할 계획을 세운다.<sup>17)</sup> 이후 도개리에 터전을 살피고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작업이 이루어져 4월 말경에는 집이 완성된다.<sup>18)</sup> 도개에는 같은 문중의 인물들이 살고 있었고 또 종고조 護軍公의 廟宇가 있었기 때문에,<sup>19)</sup> 노상추에게는 낯설은 곳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노상추는 도개로 이사하지 않고 문동에 계속 거주하였다. 새 터전을 마련하고 집을 지을 때 도개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의 본거지는 문동이었다. 그가 도개에 가는 기록도 자주 나타나고 도개 거주 인물이 내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가 새 집이 지어진 후에는 도개에 가더라도 다른 인물의 집에서 숙식하는 경우도 있었다.<sup>20)</sup> 이처럼 부친의 거주 이동과는 달리 문동에 계속 거주하던 노상추는 1778년 도개면 화림동(현 도개면 신림동)으로 주거지를 옮긴다.<sup>21)</sup>

이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관직 생활로 서울과 지방을 떠돌던 노상추가 1813년 가덕첨사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고 고향에서 은거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白雲洞에 別業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서자 盧升燁에게 경제 기반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또 1813년부터 본격화된 큰 집(琿燁-宗玉 부자)과의 불화, 화림 거주 안강노씨 가문의 인구

16) 『盧尙樞日記』 1, 1766년 6월 12일, 10월 28일 12월 17일, 1767년 11월 1일, 4일의 기사 참조.

17) 『盧尙樞日記』 1, 1767년 3월 23일, “家禍孔酷之餘 累營移徙之計 而尙未果矣 到今術卜之士 皆言家宅不吉 故又營移徙桃開之計.”

18) 『盧尙樞日記』 1, 1767년 4월 3일, 9일, 15일, 18일, 28일의 기사 참조.

19) 『盧尙樞日記』 4, 1825년 1월 4일, “還到桃開 謁從高祖護軍公廟.”

20) 『盧尙樞日記』 1, 1770년 10월 17일, “到桃開則 日已昏矣 而家嚴來臨 故反面 夕飯後宿于昌得家.”

21) 『盧尙樞日記』 1, 1778년 5월 4일, “新居村名 以華山之陽 桃林之野 取意名之曰華林.”

증가로 인한 전답 부족도 별업조성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 백운동은 월경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구가 많지 않았고, 토착세력들이 눈길을 돌리지 않는 지역이어서 서자 승업이 안착하기 쉬웠다. 승업 가족의 백운동 이주는 2월 초~3월 말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었다.<sup>22)</sup>

그러나 노상추의 주된 거주지는 화림리였다. 그가 백운동 별업에 거주하는 기간이 적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서자의 경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활동에 따른 것이었다. 그의 주된 활동의 기반은 여전히 화림리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화산과 冷山 사이의 깊은 계곡에 자리잡은 水鐵店村 근처 桃李洞에 집을 짓고 은둔하며 삶을 마칠 생각도 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포기한 것 같다. 그러나 이곳의 주민들과 月鶴松稷를 조직하여 이곳 산림의 금양활동에는 계속 관심을 보였다.<sup>23)</sup>

이처럼 노상추는 선산 고을 내에서도 여러 번 거주지를 옮겼다. 그렇지만 화림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본가가 있는 문동이나 생곡, 도개, 노년기에는 백운동까지 자주 들러 그 마을 인사들과 자주 어울리고 그 마을과 관련된 일들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사실 이 마을들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동동면, 동쪽에 도개면이 서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어 강만 건너면 쉽게 오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이기도 했다.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노상추 조상의 분묘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본가와 문중 재각이 있는 문동 주위 구릉에 여러 선조의 선영이 있었고 근처 가좌산에도 노상추 모친의 묘가 있었다.<sup>24)</sup> 낙동강 건너 도개면 도개리 서북쪽 골짜기 法華洞<sup>25)</sup>에는 증조모의 묘가 있었다.<sup>26)</sup>

22) 김성우, 앞의 논문(2010), 261~264쪽.

23) 『盧尙樞日記』 3, 1801년 10월 4일, “還到桃李洞上峯 使店村村漢 斷其延香樵車往來之路 蓋其月鶴松稷內 禁伐之故也 踰岡截嶺下山 由店村西 奴太順牽馬來到 馬則昨自河上還 科行今始還家故也 留意月鶴者 爲營一舍 遯跡終老之計 而財力未備 恨歎不已.”

24) 『盧尙樞日記』 4, 1825년 1월 3일, “余與諸曹越江倉津 拜佳佐山先妣墓 因入文洞 展拜局內先塋.”

25) 법화골은 도개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나타난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6, 197



그리고 도개면의 화산 너머 중턱의 옛 白蓮庵 터(백운동 위쪽 골짜기)에는 노상추 부친의 무덤이 조성되었다.<sup>27)</sup> 白蓮洞 골짜기에는 일찍 죽은 노상추의 형의 무덤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지만,<sup>28)</sup> 이후 노상추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 1800년에 조카들이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형의 무덤을 법화동으로 옮겼다고 한다.<sup>29)</sup> 도개면 남쪽 산내면 水月山에도 5대조와 조부의 묘가 있었고 인근 沃陽洞에는 고조의 묘가 있었다.<sup>30)</sup>

이처럼 노상추는 거주지를 선산부 내의 여러 마을로 옮겨다녔고, 부친도 여러 곳으로 옮겨 거주하면서 노상추는 해당된 마을의 인사들과 자주 접촉하고 그 마을의 일에 간여하게 된다. 게다가 선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분산수호나 분산의 산림을 금양하는 활동도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노상추는 관직이나 경제적 부의 축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가 무과에 급제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든지, 이후 관직을 얻기 위해 서울을 오르내리며 많은 관료들을 만나고 했던 모습에서 그의 관직 진출에 대한 집요한 갈망을 읽을 수 있다.<sup>31)</sup> 그의 경제적 부의 축적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것은 이미 연구된 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sup>32)</sup> 이런 관심은 분산의 금양활동이나 마을 단위의 금양 활동에도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금양활동은 분산의 금양활동이나 마을 단위의 금양활동에 그치지 않

9. 304쪽의 선산군 도개면 도개동 참조)

26) 『盧尙樞日記』 1, 1764년 1월 4일, “因上法華洞 省曾祖妣贈貞夫人完山李氏墓.”

27) 『盧尙樞日記』 1, 1772년 9월 4일, “夕後召首僧五六 言牢定葬地于白蓮庵址之由 則僧徒無諾意矣.”

28) 『盧尙樞日記』 1, 1767년 1월 20일, “自大菴寺上青蓮菴 率僧入白蓮洞 省第一兄墓.”

29) 『盧尙樞日記』 3, 1800년 2월 18일, “見斑翼書 知家問平報 伯氏緬禮以今日破舊墓 行喪到法華 伯嫂氏破墓 以四月十二日 合窆于法華云 此是大事 不議于諸父 擅自獨斷 已成痼疾 悶悶.”

30) 『盧尙樞日記』 1, 1780년 4월 4일, “是日余以榮奠發行 到沃陽洞行祀于高祖考承旨公墓 往到水月行祀于五代祖執義公墓及祖考節度公墓.”

31) 정해은, 앞의 논문(2008) 참조.

32) 김성우(2010), 이정수(2011)의 논문 참조.

고, 더 나아가 封山 지정 등 고을 차원의 금양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이제 그가 벌인 각각의 금양활동을 범주화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1> 노상추와 관련된 마을과 분산 소재처

### Ⅲ. 분산의 수호 및 금양 활동

조선후기 사족 가문의 묘지 영역에 대한 침범이나 분산 금양처의 무단작별이 광범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사족들은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했다.<sup>33)</sup> 분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노상추의 가문은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가 더

33) 김경숙, 앞의 논문(2003), 135쪽.

어려웠을 것이다. 분산의 범위를 둘러싼 다른 가문과의 산송도 빈발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상추 가문과 朴春魯 가문의 산송이다. 안강노씨 입향조인 盧從善 묘가 상구미면 성남촌에 있었는데, 이 묘역을 둘러싸고 노씨 가문과 女塚에 해당되는 박씨 가문 사이의 산송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산송은 1807년 1월부터 1811년 4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가 결국 노상추가의 의무에 끌려갔다가 석방되면서 소송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sup>34)</sup>

이외에도 1773년과 1802년 원당동 양반 宋之翰(之杰)-應敬 부자와 노씨 사이에 법화동 분산 침범을 둘러싼 분쟁,<sup>35)</sup> 1800년 崔翺天이 법화동 분산과 관련해 제기한 산송,<sup>36)</sup> 1802년 인척인 趙杓 가문과 백련동의 墳山 문제로 인한 산송,<sup>37)</sup> 1827년 법화동 선산 금양송에 대한 金璞의 작별 문제로 인한 산송<sup>38)</sup> 등 여러 산송이 줄을 이었다. 이외에도 노상추는 분묘와 금양영역을 넓히기 위해 다른 지점에 미리 埋標하기도 하였다. 1802년 백련동에서 보이지 않는 靑蓮庵 후록에 沙鉢을 매표한 것이 그것이다.<sup>39)</sup>

노상추는 분산 침범을 막기 위해 각 분산에 산직을 두어 묘와 금양목을 관리하려 했다. 그리고 이들이 좀더 적극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수령에게 여러 산직들의 연호잡역을 면제해 주도록 요청해 완문을 받아내기도 했다.<sup>40)</sup> 그의 분산에 대한 금양활동은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백련동 분산에 대한 금양활동이다.

백련동 분산의 금양활동은 형의 묘가 조성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34) 김경숙, 앞의 논문(2008) 참조.

35) 『盧尙樞日記』 1, 1773년 2월 15일, 16일 ; 『盧尙樞日記』 3, 1802년 4월 28일, 5월 10일, 11일.

36) 『盧尙樞日記』 3, 1800년 4월 15일.

37) 『盧尙樞日記』 3, 1802년 10월 1일, 10월 4일.

38) 김성우, 앞의 논문(2010), 289쪽.

39) 『盧尙樞日記』 3, 1802년 10월 20일, “早登靑蓮庵後麓 白蓮洞不見處 埋標沙鉢於女坐巳向之地.”

40) 『盧尙樞日記』 2, 1795년 5월 16일, “向府見府伯 … 余請水月·法華·大菴三處山直 煙戶雜役勿侵完文 府伯許之 因卽抽出成帖.”

다.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그의 부친이 이곳에 묻히고 형의 묘는 법화동으로 이전되지만, 노상추의 금양활동은 지속되었다. 화산 너머 동쪽 중턱에 있는 백련동 골짜기는 백운동 쪽에서 보면, 大菴寺(大寺)→청련암→백련동→백련암→부의 묘소에 이르는 순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sup>41)</sup> 이외에 백련동 골짜기에는 龍華庵도 존재하고 있었다.<sup>42)</sup> 백운동은 대둔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둔리 바로 아래 쪽에 붙어 있어서, 대둔리는 백운동이라고도 불린다고도 하였다.<sup>43)</sup>

백련동 금양활동에 대한 전체 내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일기 1802년 10월 4일자 기사이다.<sup>44)</sup> 이에 따르면, 부친의 분묘가 위치한 곳은 원래 백련암의 터였다. 이전에 승려들이 土窟을 파서 거처하다가 후에 암자를 짓고 백련암이라 칭하였다. 이후 6년이 지나면서 포악한 자들이 변을 일으키

41) 『盧尙樞日記』 1, 1767년 1월 20일, “自大菴寺上靑蓮菴 率僧入白蓮洞 省第一兄墓 悲懷難抑 哭拜畢 下寺還家 則大人已下臨矣.”; 1780년 4월 12일, “因上大菴寺 少憩 後 上白蓮洞 行墳墓榮奠 奠畢而雨自西南至 因下山入靑蓮庵 雨注不止 英仲挺燁下大寺 余則宿于庵話諸僧.”

42) 뒤의 주 45) 참조.

43) 『盧尙樞日記』 1, 1780년 5월 16일, “是晚踰葛峴 止宿大菴里 是名白雲洞也 庶族尙挺在此也.”

44) 『盧尙樞日記』 3, 1802년 10월 4일, “英廟壬午三月 先君葬埋長子喪 其後十一年壬辰 九月 奉窆先君之喪 使寺僧伐彼僧養之松櫟 因定山直池守才者 禁養白蓮上一洞 而猶爲僧徒之潛斫 不能如意 守才死後 奴劔金 婢夫汗先 繼守局內 猶不如守才 … 故卽於先朝辛亥 與弟侄設爲禁養稷目 使庵寺四房 入屬稷中 諸僧同錄 成出完議 山主合出一兩錢 四房各出二十五分錢 合爲一兩錢 以立稷物 嚴立約條 而亦於英廟丙申 呈出一洞禁養立旨 以待成立 而卽於先朝戊午歸省 則其間劔金汗先身死 以南孫正用兩漢 定爲山直 亦有年 而兩漢之功 別無著矣 寺僧稷約 亦未嚴立 此則無他 先君出入此山十年 一不罪僧 余亦出入三十一年 一不罪僧 僧徒之不遵約條 以此故也 其間僧徒奸狀綻露者 寺僧盡是農作 每於春節折草 山直家以上則盡爲潛折 以下則不折 上只有松 下只有櫟 隱然若寺內之私自禁養 … 當初僧徒慮失白蓮庵舊基 初設土窟而僧居 其後毀土窟 而大建山庵 名號白蓮庵 其後六年 虎豹作變 負木連曳 庵不奠居 僧乃四散 庵乃頽圯 大寺毀用於重修之役 庵其墟矣 然吾家先占 觀其事變 待時而待主者也 … 自戊午至于五年 山面渾壑 俱成禁養 以今觀之 來效可期 卽於戊午上京時 省墓 嚴責僧流之奸狀 命罷僧流稷目 各別嚴繩 以杜僧奸之弊矣 厥後僧流來乞不罷稷目 稷物漸長 昨年始買三斗畚于大寺洞下 僧輩知其來後犯斫之罪 罷稷 則不勝支當故也.”

고 주위 수목에 대한 작별도 연이어져, 승려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암자가 퇴락하여 공터가 되었다. 이 터를 노상추 가문이 선점하여 1762년과 1772년 형과 부친의 묘를 조성하였다.

노상추는 원래 승려들이 기르던 수목들을 그들로 하여금 베어내게 하고 백련 상·하동을 일괄하여 산직을 정하고 금양하도록 하였다. 1776년에는 관아에 정소하여 一洞의 禁養權을 보장하는 立旨를 받아냈다. 그러나 주위 승려들이 몰래 수목을 베어내어 금양이 여의치 않았고, 그 뒤 다른 산직을 두었는데도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1791년 동생조카들과 더불어 禁養 稷目(松稷)을 마련하고 주위 사찰 4房의 승려도 계에 입속시켜 完議를 작성하고, 山主(노상추 형제와 조카)가 공동으로 1량 전을 내고 4방에서는 각각 25分の 전을 내어 이를 稷物로 삼고 약조를 엄격히 세워 운영하였다.

그런데 관직에서 물러나 1798년 잠시 고향에 들렀던 노상추는 산직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계의 약조가 승려들의 농간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승려들을 계목에서 축출하려고 하자, 승려들이 계목이 깨지면 자신들이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목을 혁파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여 시행하지는 않았다. 그 이후 1802년까지 금양이 잘 이루어져 계물도 늘어나고 대사동 밭의 3두락의 논도 매입하여 계물로 편입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1815년 종손인 조카 珽燁 부자가 계물 기금이 정업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하면서 승려들을 위협하여 송계 소속 논을 자신의 논과 강제로 교환하는 일을 벌였다. 이외에도 정업은 이전에 노상추가 고향을 떠나있을 때 竹月軒 건립 및 實記 印刊과 墓碣을 세우는 일을 위해 조성했던 別付錢 수천 금을 횡탈하여 자신이 소비해 버렸다. 이것은 노상추가 33량을 기금으로 이식을 불러 조성해 놓은 것이었고 조카는 여기에 돈을 보탠 일이 없었다. 이런 조카의 행동에 분개하여 1813년 백련동 송계의 돈과 전답을 분리하여 토지를 조카에게 소속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다가 다시 조카의 토지환탈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sup>45)</sup>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노상추는 산직의 감독과 송계 운영을 통해 백련동에 대한 금양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런데 이 계에는 원래 백련동 주민은 참여시키지 않은 것 같다. 백련동 선산의 산직을 시켜 백련암 뒤의 기슭에 木柵을 설치해 백련동 초군의 왕래 경로를 차단한 것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sup>46)</sup> 그러나 백련동에서는 금양계(송계)와는 별도로 洞契가 조직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백련동 주민들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계물도 마련되고 매년 계회 때 酒饌이 배풀어지고 시골벽적해지는 상황을 노상추가 내키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sup>47)</sup> 동계가 시기적으로 노상추의 말년인 1828년 무렵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존 금양계를 포괄한 새로운 동계가 조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노상추는 금양을 위해 선산 주위나 집 부근에 수목이나 그 씨앗을 심어 금양목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1799년 문동 부근에 있는 松菴公 분묘 머리말의 모래바람 날리는 곳과 文山社 뒤 암벽 좌우에 상수리 열매를 심었다.<sup>48)</sup> 1802년에도 수월산에 상수리 열매를 심고, 또 1778년 대곡사를 지나다 얻은 잣나무 열매 한 덩이를 집 뒤의 언덕에 심었는데, 이것이 이 무렵 잘 자

45) 『盧尙樞日記』 4, 1815년 1월 17일, “渡院旨津 船到大菴寺 日已夕矣 宿佛尊房 … 法弘軌坦諸僧會話 聞珽姪父子互相往來 恐喝僧徒 換奪松稷分給畚云 是何義理 大凡辛亥松稷設立之初 寺之兩房及龍華·靑蓮兩庵 各出二錢五分錢 兩班三宅合出一兩錢而錢出於珽矣 財主之說 出於宗玉之口 故慮其後弊之際 珽姪父子 乘余不在家之時 橫奪別付錢數千金 私自消瀆 所謂別付錢者 爲建竹月軒及實記印刊 與墓碣刻堅也 余判三十三兩錢 殖利補長 爲千餘金之物 而珽本無分錢添補之事---珽姪父子 全吞而肆惡 則背義蔑倫 已無餘地 故卽於癸酉 乃分白蓮松稷錢及田畝 盡歸珽畚 是二十斗落 錢是四十餘兩.”

46) 『盧尙樞日記』 4, 1815년 3월 24일, “是日率山直遮塞庵後 往來白蓮洞樵軍徑路 而設木柵.”

47) 『盧尙樞日記』 4, 1828년 11월 12일, “以白蓮稷會事 率升輝由丹丘生物峴 渡院旨津上白蓮…故共與上山 止宿龍華殿 明日稷會故也.” ; 11월 13일, “朝後行稷會 每年設酒饌 飲酒喧撓 可痛 故近年以來 廢酒設白餅羹舉行 無有醉談事 甚可佳 今年稷會穀物半減而作錢 則倍加平年殖貨 雖有大利 民事則惶惶 可歎可歎.”

48) 『盧尙樞日記』 3, 1799년 9월 19일, “朝省右麓部將公松菴公以下墳墓 種橡實於松菴公墳墓 腦後風沙處 晚又種橡實於文山社後岩下左右 瞻謁文山先祖里社.”

라고 열매가 여물어 18덩이나 따서 선조 묘우에 바치기 위해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sup>49)</sup> 1814년에는 노비를 동원해 主山 동쪽 기슭에 海松子를 심기도 했다.<sup>50)</sup>

1825년에는 별업이 있는 백운동 동구에도 상수리 열매를 심었고, 손자를 시켜 원당 마을 影堂 앞 동산에도 상수리 열매를 심어 享禮 때 상수리 나무 한 그루를 베어 땀나무로 쓰려 했는데, 庫直이 상수리 나무 껍질을 미리 벗겨내버려 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sup>51)</sup> 백련동 묘의 좌우 소나무가 없는 곳에도 1826년 상수리 열매를 심었는데, 사용된 것이 모두 20여 두나 되었다고 한다.<sup>52)</sup> 그리고 문동 松堤의 소나무와 계곡에 남아 있는 수목에 대한 遺戒文을 별도로 작성해 둔다든지 수월산 松楸의 보존을 위해 完議를 작성하여 大宗家에 보관해 두고 후손들이 이를 준수토록 하기도 하였다.<sup>53)</sup>

분산의 금양목은 노상추 가문의 여러 소용처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1801년 문동 舊家를 이긴하거나 廟宇 椽木을 위해 법화동 분산의 수목을 베어내 사용한 것<sup>54)</sup>이나 1808년 화림동 棟樂堂 연목 중 부족한 것을 법화동에서 벌채해서 사용한 것<sup>55)</sup> 등이 그 예이다. 분산과 松楸 내 虫食木을 작별해서

49) 『盧尙樞日記』 3, 1802년 8월 17일, “箕自文洞還言 今晚往水月 看審種橡實回還云 登家後岸上 觀栢子 栢子盡熟 摘十八塊 戊戌年春三月 過大谷寺 得一塊栢叢生 還植于此岸上 于今二十五年 長成者爲十七株 始乃結實 可佳 薦于祖廟之意 命藏之.”

50) 『盧尙樞日記』 4, 1814년 2월 29일, “食後余與文玉·升燁 率廊下奴輩 種海松子于主山東邊之一麓 畢種而逢細雨下還.”

51) 『盧尙樞日記』 4, 1825년 2월 2일, “送五斗橡實于白雲別業 種之于洞口 使第二孫明琬 率太順持一斗橡實 往院堂種之于影堂前東山 到今任員不得其人 年年享禮時 斫伐一株橡實木 爲柴 庫直預剝橡木皮 使之自枯 以備明年之柴具 莫之禁護 良可痛矣.”

52) 『盧尙樞日記』 4, 1826년 2월 8일, “朝種橡實于墓左右無松處 合爲二十餘斗矣 宗玉伐家材于白蓮 晚余下山由洛津到山斗村.”

53) 『盧尙樞日記』 3, 1800년 11월 14일, “又爲文洞松堤松及洞壑餘存樹木 別成遺戒文 又爲水月松楸 別成完議 藏于大宗家 後生能遵守乎.”

54) 『盧尙樞日記』 3, 1801년 8월 24일, “文洞舊家舍移建 營爲自今鳩材 是日往法華 看伐木.”; 10월 16일, “往法華 率木手吳希悅 伐廟宇椽木 暮還.” 이외에 10월 17일, 11월 11일 기사 참조.

55) 『盧尙樞日記』 3, 1808년 1월 9일, “往法華洞 伐棟樂堂椽木不足者焉.”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虫松木은 1짐에 3分錢으로 정하기도 하였다.<sup>56)</sup> 石役所 工錢의 立本을 위해 松枝의 발매를 논의하기도 하였다.<sup>57)</sup> 친척에게 법화동 선산에 있는 일부 소나무의 벌채를 허용하기도 하였다.<sup>58)</sup>

이처럼 노상추는 분산에서 금양해서 잘 조성한 수목이나 수초를 문중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소용처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직을 엄격하게 감독하여 분산이나 송계에 속한 수목을 잘 관리하여야 하였다. 이를 위해 때로는 산직이 금양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다짐을 받아 두기도 하였다.<sup>59)</sup>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다. 1828년 아들을 시켜 백련동 금양처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산직 云玉이 담당하는 곳은 송목이나 잡목이 한 그루도 벌채되지 않았고 낙엽도 그대로 있는 반면에, 암자 승려가 담당하는 곳은 70여 그루가 벌목되었고 고초나 낙엽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이 때문에 승려들에게 산직을 그만두게 하고 그곳에서 축출할 생각도 하였다.<sup>60)</sup> 멀리 떨어져 관리하기 어려운 곳은 피해가 더 심했다. 예컨대 산내면 수월산에 있는 금양처에서는 인근 주민이 송피를 모두 벗겨가버린 사실도 있었다.<sup>61)</sup>

게다가 관아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양처의 수목을 벌채해 갔다.

56) 『盧尙樞日記』 3, 1802년 10월 23일, “是日令局內松樛 虫食木斫伐 先自案山 向夕留 珽看事 余還于家 虫松木 每負三分錢定式.” 이외에 11월 4일, 11월 10일 기사 참조.

57) 『盧尙樞日記』 4, 1828년 11월 17일, “午興德兒率奴崔三往白蓮 方議發賣松枝 爲石役所工錢立本計也.”

58) 『盧尙樞日記』 4, 1825년 3월 30일, “是日族從尙標尙발(木發)又來見 故躬往法華 許斫二株松 短而不直 苟且莫甚.”

59) 『盧尙樞日記』 4, 1825년 3월 13일, “午白蓮洞山直南孫 率其妻來待因宿.” ; 3월 14일, “朝後南孫以自今日爲始 雖一負柴木松枝枯草落葉 如有斥賣於洞口外之事 則嚴治 永汰之意 納僦音後 率其妻告歸.”

60) 『盧尙樞日記』 4, 1828년 11월 22일, “再昨興德兒 自白蓮反面言 頃往十八日登山摘 奸 遍踏山南北谷 谷則山直云玉次知禁養處 則松雜木無一介伐傷 而落葉亦自在 而庵 僧次知處 則伐木七十餘介 枯草落葉無所餘存 … 是實山賊也 爲先宇坦·定坦兩漢 撤產 逐出爲計.”

61) 『盧尙樞日記』 4, 1815년 2월 22일, “自文山渡津 往省水月先塋 山內居民 盡剝松皮 無一餘者 痛泣難狀.”



1825년 8월 18일에는 蓮塘의 芙蓉亭 1간 중수에 필요한 椽木이라 하여 장교를 보내 백련동 금양처의 수목 50그루를 베어갔고, 이튿날에도 추가로 50그루를 베어갔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30그루인데 장교와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너무 과다하게 베어간 것이었다. 노상추는 관아에 들어가 이에 대해 수령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sup>62)</sup> 1828년에는 수철점의 南太佑가 동문에 쓰일 기와를 굽는 일을 총괄하는 감관을 맡은 것을 기회로 법화동의 수목을 남벌하려 했던 적도 있었다.<sup>63)</sup>

#### IV. 마을 조직을 이용한 금양활동

분산을 중심으로 한 금양계와 마을 단위의 금양계를 언급한 것으로 김경숙의 논문이 있다. 그런데 논문 주제가 私養山 금양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송계도 분산 중심의 송계가 마을 단위로 확산된 형태만 다루고 있고, 분산과 관계없는 마을 단위의 금양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언급이 없었다.<sup>64)</sup> 분산과 관계없이 마을에 인접한 산야를 마을 공동의 금양처로 삼아 금양계를 운영하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마을 단위에서 더 나아가 먼 단위로 확장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sup>65)</sup>

62) 『盧尙樞日記』 4, 1825년 8월 18일, “是午山直來納宗玉書 有曰 自官送將校 伐蓮塘重修椽六十介云 甚矣 官之害於民 若是之極耶 自官前後將過千株 痛矣 宗玉昨往白蓮留而通之也.”; 8월 19일, “是日 山直又來告五十更伐云.”; 8월 21일, “到府見官役 卽蓮塘芙蓉亭一間也 六方之屋多不過三十椽 而兩日所伐合爲八十餘介 則可謂三倍也 校吏之弄奸 不勝憤痛 入衙見主倅 說罷伐椽過數事.”

63) 『盧尙樞日記』 4, 1828년 5월 13일, “今日卽水鐵店南應老之到門宴也 卽店漢南太佑之子也 太佑本以頑濫 … 卽於東門之役燔瓦 而太佑爲監官 作窟於法華 期於楮伐數箇其罪二也.”

64) 김경숙, 앞의 논문(2003), 131~134쪽.

65) 선산군의 경우 뒤에 언급하듯이 독동동면의 江邊禁藪, 도계면의 화산 금양을 위한 계가 있었다. 의령의 『寒泉洞案』에 의하면 의령 보림면에서도 동계 내에 금송활동이 포함되고 있었고 이후 『禁林同苦洞案』이 별도로 마련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조직도 동계(동회)와 병존하는 경우와 동회·동약 속에 포함되는 경우로 나뉜다. 한 마을에 동회와 송계가 동시에 병존하는 사례는 선산부에서도 발견된다. 문동66)과 백운동의 예가 그것이다. 반면에 생곡동의 금양활동은 생곡동 동계에 속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상추는 문동에 거주하면서도 일찍부터 생곡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곳에는 그의 친척과 친지가 적지 않게 살고 있었고, 그의 부친이 한 때 이곳에 거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의 부친이 생곡동 동회에서 尊位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그도 동회에 일찍부터 참여하고 있었다.<sup>67)</sup>

그런데 1802년 조카 정엽과 함께 생곡 동회에 참여해서 본동 座目에 입록되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다. 친부형이 좌목에 입록되고 자신도 상존위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洞中物議로 자신의 입록을 꺼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775년 이후 추가로 입록된 자들이 그를 배척하고 있었던 것 같다.<sup>68)</sup> 그는 1778년 독동동면에서 도개면 화림리로 주거지를 옮겼기 때문에, 이전 다른 면의 주민으로서 생곡동 문제에 깊숙이 간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관직을 맡아 여러 곳을 떠돌며 고향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점도 있었다. 게다가 1779년 생곡동에 독동동면 전체를 포괄하는 書堂을 설립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계를 조직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10년 전의 서당계에서

---

이후 별도 분석이 있을 것이다.

66) 『盧尙樞日記』 3, 1802년 10월 25일, “今日卽文洞洞會與松稷會 而拘於客 故未往 送奴崇業通示之.”

67) 『盧尙樞日記』 1, 1768년 10월 18일, “自校村到省寓 則今日洞會 而家嚴當尊位 故往臨矣 余亦往參 暮還家.”; 1779년 10월 13일, “余以省谷洞會事往參…往參洞會 因宿洞舍.”

68) 『盧尙樞日記』 3, 1802년 10월 22일, “與珽侄省谷洞會 余之今行 欲爲入錄於本洞座目 以爲世修之稷也 旣到洞舍 上尊位趙欽哉命汝·朴伯逢之源·都完之完謨 三員來會 其他稷員 舉皆不來 鄭威惟健·惟徹從兄弟來到 始言洞中物議 苦忌余入錄 金理玉·粹玉·尹衡老不來 兩金隱家 尹則在野 觀彼舉措 誠極可駭 且云迫入防塞 已有完議云 誠極可駭 親父兄入錄 已至五十年 余又攝事 冒參上尊位 亦二十九年 宗侄代行 今至二十八年 則乙未以後迫入者 豈敢自主張乎 痛駭痛駭.”

의 분란 및 파기 문제로 노상추 형제는 참여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 계원 중상을 당한 자에 대한 예물을 바치지 않은 점과 계원 간의 분란을 조성했다는 점도 작용했다.<sup>69)</sup>

1802년 사건을 계기로 노상추는 이후 1815년까지 생곡동회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거의 그 마을에 가지도 않은 것 같다. 마을에 들러 잠시 특정 인사를 만난 것이 몇 번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생곡에 거주하는 특정 인사가 노상추를 방문하는 일은 적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815년에는 다시 생곡동의 일에 간여하기 시작하고, 생곡동에 들러 그곳 인물들을 만나는 빈도가 높아진다. 12월에 들어서는 생곡동의 中有司와 좌우 頌座들이 와서 알현하는 것으로 보아,<sup>70)</sup> 이미 노상추가 생곡동의 일에 간여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중유사와 좌우 영좌는 아마 양반이 맡는 上尊位 밑에 배치되어 중인 이하가 맡는 동임직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듬해에는 그가 생곡 동회에 참여하는 기사도 나타나고 생곡동 副尊位 權取卜이 와서 알현하는 기사도 보인다.<sup>71)</sup>

이 무렵부터 그가 생곡동의 금양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간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해 11월 그는 생곡동 근처 勝山에 대한 樵畝를 내리고 동료와 함께 중유사의 모친 집에서 樵薪價를 징수하는 일을 감독하였다.<sup>72)</sup> 그런

69) 『盧尙樞日記』 1, 1779년 5월 29일, “古南鄭戚丈崑甫鄭戚從宅新來到省谷 請余兄弟云 故往見焉 議設面中書堂故也 都克昌燕謨倡之 初議一面盡參 而到今落者過半 謂余兄弟叔姪入參 而十年前面中年少 往學于省谷金上舍崇德氏門 議設書堂 則員十七 物力不小 俄而稷目歸虛 堂宇無處 豈無慨意乎 向之勤念 於書堂言之 則英仲學於書堂 故入爲稷員 其間稷員中全錫者 遭其母喪 而以三貫錢問之 至於英仲 則遭其所後家大故而無白紙一束投問 其後尹任叔衡老 責出稷物 遍利鷄於英仲者 甚督矣 余責英仲之過而使之退學落稷 英仲則伊時未冠日也 其後不久 金上舍下世 堂宇無處 物力掃如 … 今日設稷倡之者 卽前稷員 則余豈有參稷之意乎 余以此無參意云 則尹任叔引嫌曰 既有前稷無處之說 則吾無參意云云 爻象 余與尹任叔必爲作隻 不得穩罷此會矣 余欲笑罷爲計 言書余宅號於稷案 則長老強書 尹友之宅號 尹友之角立 卽前日稷中幹其事故也因不書英仲宅號者 余意姑息故也.”

70) 『盧尙樞日記』 4, 1815년 12월 28일, “省谷中有司權重弘 及左右頌座權知重 金就升來現.”

71) 『盧尙樞日記』 4, 1816년 10월 3일. ; 11월 2일.

데 얼마 안 가서 그는 다시 생곡 동회에서 배제된다. 『노상추일기』 1823년 5월 1일자에는 그가 생곡 동회에 보내는 단자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계해(1803)년의 일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을해(1815)년에 稷의 말석에 참여하였으니, 서로 돈독한 정분을 위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 후 계가) 묵묵히 계의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런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인(1818)년의 일이 터져 돈독한 정분이 서로 끊어져 (저는) 山窩에 깊이 숨어살았고 稷會에 참여하지 않은 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sup>73)</sup>

여기서 1803년의 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802년에 노상추가 생곡동 좌목에 임록되지 못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기의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이후 한동안 생곡동에 관여하지 않다가 1815년에 다시 생곡동의 일에 간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계의 말석에 참여해서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1818년에 다시 사단이 벌어져 생곡동과 관계를 끊은 것으로 되어 있다. 1818년의 일기가 남아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松堂 朴英(1471~1540)의 廟宇 앞에 조성된 禁藪로 생곡동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금수는 旅軒 張顯光(1554~1637)이 松堂 廟宇 앞이 너무 허전한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종 徐介山의 밭에 수목을 조성한 것이었다. 금수는 원래 여헌의 후손이 관리하다가 오래 전에 생곡동 동계에 관리가 맡겨졌다. 그런데 동계가 탕패하여 금수를 관리하는 藪直에게 매년 주어지는 6량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1818년 무렵 金烏書院에 松旅 2인이 모셔지면서 해당 서원이 관리권을 주장하며 監官 山直을 정하였고, 관리권은 생곡동 거주 上·下人에게 넘어갔다. 이를 획책한 자는 본동에 거주하지만 기존 동계

72) 『盧尙樞日記』 4, 1816년 11월 6일, “是日發勝山樵令 與朴友·趙友·尹翰國共會中有司 權取卜母家 終日看樵薪價 合爲十二兩五錢云.”

73) 뒤의 주 75) 참조.

에는 참여하지 못한 자[洞外之人]인 金喆儒였다고 한다. 이런 마찰 이후로 노상추는 생곡동 동계에 간여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후 금수에 대한 벌채와 매매가 자주 이루어져 40여 금이 모아졌는데, 1823년에도 또 수목이 방매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게다가 古南의 鄭씨들과 생곡동 거주인이 상의하여 新洞稷과 稷目을 마련하고 노상추는 여기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이에 분개한 노상추는 洞主에게 편지를 보내 이 금수는 舊洞稷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4월 28일 동회가 열렸던 것이다.<sup>74)</sup>

그러나 노상추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5월 1일 생곡동회에 단자를 보내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구동계를 혁파하지 않은 채 신동계를 마련하고 이에서 자신을 배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금수의 소나무를 팔아 얻은 30여 금을 금수를 둘러싼 소송에 들어간 비용에 충당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중유사 權只重이 勝山の 수목을 모두 팔아 사사로이 써버리고 동계에 납부하지 않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洞外之人의 말이라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과, 중유사 權喆孫이 牛禁을 어기고 사사로이 도살한 것을 동회의 연회용 도살로 속여 동계에서 소송비용이 모두 지출되게 한 점을 들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은 모두 上稷가 下稷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계의 행동을 따르기만 한 결과때문이라고 통렬히 비판하였다.<sup>75)</sup>

74) 『盧尙樞日記』 4, 1823년 4월 28일, “是日往省谷洞會 本洞洞會事 非他 禁蔽一款 卽昔旅軒先生 以松堂先生廟前虛遠 植木於先生奴子徐介山之田 故介山九十長壽 每言植木之由 余兒時常聞焉 而口碑不滅 洞稷禁護 每藉是說 百餘年遂守 中間先生子孫 不能主事 出付洞稷 幾過百年 而到今洞稷蕩敗 數直貫錢 每年六兩定式 而難於辨出 故五六年前出付居洞上下者 爲其本村之洞口 故自該洞血心共護者也 其間松堂本孫 有誤事之端 伊時移去新谷 自金烏書院 謂之旅軒爲松堂植木之地 則松旅兩先生 旣入本院 自本院可以次知主張 定出監官山直 於是乎本洞人金喆儒 以洞外之人 主張其事 呈官呈營至於得捷矣 以是之故 其間伐木賣買浪藉 至於四十餘金 而余未聞焉 至于今春 又謂放賣云 而余乃聞之 書于洞主言 出付本洞 全出於守護 則伊來放賣之數旣多 則反不如還付舊洞稷 今日之會 此也 今日會中金喆儒言內 旣以出付生居之人 中間訟卞 渠已主之 還付舊洞稷 非義也 今日詳聞 則古南鄭戚諸人 與本洞生居人 相議新設稷案 造新橫 分出禁護文卷 新設稷目 論斥吾家而已 則居洞上下之人 苦我之同稷 明若觀火耳.”

75) 『盧尙樞日記』 4, 1823년 5월 1일, “是日送單于生谷洞中 其略曰 伏以日前洞會 乃公也 非出於私也 癸亥之事則二紀已過 然乙亥之獲參稷末 出於好誼也 含默從事 將近十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송당 묘우 앞의 금수 금양에 대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남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었다. 1816년에도 이곳에 대한 금양을 범한 사람 12명에 대한 벌칙으로 생곡동 중유사를 시켜 금수의 공헌한 곳에 소나무나 버드나무를 심게 하는 등 이곳 금양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sup>76)</sup> 물론 노상추는 이 금수 이외에 생곡동이 금양권을 가지고 있던 승산에 대해서도 간여하였다.

그가 간여한 마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젊은 시절인 1770년대에 강변에 柳藪가 조성되어 금양되고 있었는데, 이는 특정 마을이 아니라 독동동면 전체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江邊禁藪’ 또는 ‘面中柳藪’라 표현되었던 것이나, 1772년 일부 주민이 여기를 범해 경작하거나 나무를 베는 일이 발생하자 風憲約正勸農官禁藪監官 등 면임들이 나서서 이를 처벌하려 하였던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면임들에게 처벌을 지시한 자는 노상추의 인척인 고남 정씨 및 노상추 가문 인물 등 이 지역의 중요한 양반 가문의 인물이었다. 특히 노상추의 부친이 이들을 아주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면임들이 적당히 贖錢을 받고 용서해 주자는 의견을 내었지만, 그의 부친은 아무리 이들이 애걸하더라도 당시까지 4차례나 범금하였고 관에서도

---

年 然戊寅之事又出 則好誼相絕 故深居山窩 不參稷會者 已五年 … 今聞禁藪伐木之舉 不可無一番合席而已 故忘勞赴會 卽於會席 詳聞梗概 則伐木事 以吾言許付元居洞中事 隨其諾而爲私云 … 且聞到今新設洞稷 造櫬而分藏舊洞稷可據文跡 而新成稷案中 鄭戚 則以有功於新設 特爲同錄 獨斥吾家 … 卽有一悖乖端 洞中破舊稷 則更爲新設無 或怪也 而不破舊稷 更爲新設洞稷 舊洞座目自在 座目諸員俱錄於新洞案 則舊則白晝 之事也 新則昏夜之事也 … 至於訟藪之日 所費不小云 而松堂廟後還退時 旣曰 賣松三十餘金云 則訟債 何不入錄於賣松錢乎 以姑許一辭爲悞(木霸)柄 則本洞之乖端 專起 下稷 故本洞上稷 爲行下於下稷故也 年前權只重 爲中有司 盡賣勝山之木 分而食之 不 納洞稷 故余於是呈于洞中 而以洞外人之言 置不施行 權喆孫爲中有司時 爲洞宴屠牛 其時喆孫 先屠一牛而分食 及屠宴牛 以牛禁捉囚 鐵孫掩其私屠 以宴牛之屠歸之 於囚 禁許多獄費 盡徵於洞稷 洞畝盡入於鐵孫之囚禁債 洞物因是破 則上稷豈不爲下稷之 行下耶.”

76) 『盧尙樞日記』 4, 1816년 3월 3일, “分付省谷中有司 使禁藪犯禁漢十二名 種植松柳 于禁藪空虛處 此藪田土 則旅軒先生家奴綿田也 先生爲遮松堂家廟洞口虛遠 起義手 植 故後生景仰故也.”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sup>77)</sup>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노상추와 그의 부친은 이미 일찍부터 이 강변유수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노상추가 간여했던 송계의 예로 더 들 수 있는 것이 月鶴松稷이다. 이곳은 화산과 냉산 사이에 남동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골짜기의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는 水鐵店村, 桃李洞, 守義洞이 위치해 있었던 것 같다. 도리골 고개는 수철에서 냉산을 넘어 해평면(당시 산내면) 도리사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도리골은 수철 남쪽에 있는 골짜기에 있었다.<sup>78)</sup> 수의동은 『한국지명총람』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그 부근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1828년 노상추가 평민에서 行首軍官으로까지 신분상승한 店漢 南太佑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는 가운데, 도리동수의동 송계가 거론된다. 노상추는 일찍이 골짜기 주민들과 함께 이 송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소나무들이 잘 자라 모두 기와집 椽木으로 쓰일 만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남태우가 양반이 이 골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싫어하여 이방 姜時彦을 꼬드겨 남문루를 다시 세울 때 이곳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 헐벗은 상태가 되게 만들었고, 나머지 不用木은 강시언의 노숙들이 작당하여 천여 명의 초군을 이끌고 와서 다 없애버렸다. 이로 인해 송계는 깨졌지만, 대신에 새로이 동계를 만들어 운영하였다고 한다.<sup>79)</sup>

77) 『盧尙樞日記』 1, 1772년 3월 10일, “古南鄭戚丈崑甫來話 而江邊禁藪 犯耕犯斫者 使勸農官·約正·禁藪監官輩報官 欲爲懲勸之地.” ; 3월 24일, “以面中柳藪事 與古南鄭戚丈及數三人 往江岸 則風約及勸農官·禁藪監官 其他犯禁人等皆會 論以受贖而罷 此非他 上有犯禁者也.” ; 3월 26일, “古南鄭戚丈崑甫來話 風憲·勸農官·禁藪監官及犯禁各人等皆來 請陳無至捉送降定之境 此則日前起耕犯斫柳木者 一并後錄報官 則題音內 犯耕者 依節目降定計料 犯斫者捉送云 故方欲捉送 而論議不一 不忍依律定罪 論以受贖 而家嚴留寓 聞其故曰 此漢輩乞降 今至四次 而尙爾如前起耕犯斫 不可因以勿施 故更欲捉送故也.”

7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6, 1979, 304쪽의 선산군 도개면 다곡동 참조. 여기에서는 도립골이라 기재되어 있지만 도리골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79) 『盧尙樞日記』 4, 1828년 5월 7일, “今日 卽水鐵店南應老之到門宴也 卽店漢南太佑

그런데 그의 일기에 의하면, 도리동수의동 송계는 월학송계라는 명칭으로도 나타난다. 월학송계는 수철점촌도리동수의동을 아우르는 형태의 송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월학송계를 조직한 것은 1801년 10월 이전이었다. 그가 도리동에 대한 금양 입안을 받은 것이 1781년이었던 것으로 보아,<sup>80)</sup> 1781년 이후 다른 마을로까지 금양을 확대하면서 송계를 확대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는 월학송계에 자주 참여하였고 또 다른 지역, 특히 산내면 延香驛의 초군들이 월학송계 내의 수목을 벌채하지 못하도록 점촌 주민들로 하여금 그 길을 차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sup>81)</sup> 아들을 월학에 보내 稷租를 수합하는 일을 감독하고 오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었다.<sup>82)</sup> 그가 여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는 1802년 9월 수철점촌에서의 월학송계 모임을 마치고 난 이후 수의동 밑에 있는 폭포 아래에 돌계단을 쌓아 서당 기지를 조성하려 하였다.<sup>83)</sup> 아마 이후 거주하면서 후생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송계가 깨지고 난 이후에도 그는 월학 동회에 참여하고 있었다.<sup>84)</sup>

노상추는 그가 별업을 조성한 백운동의 송계에도 적극적으로 간여하고 있었다.<sup>85)</sup> 그가 백운동 송계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그곳에 별업을 조성하

---

之子也 太佑本以頑濫 初頭砲手舉行 拜於堂下 … 中間余率谷內居民 乃設桃李洞守義洞松稷 松木長養 皆至瓦家椽木 太佑苦其兩班出入谷內 誘引姜時彥吏房時 更建南門樓時 盡緒以伐之 其餘不用木 時彥奴屬作魁 日率近千名樵軍而破之 故因罷而自退 則是爲見遂松稷案 改定爲洞稷案 故渠無奈何 至今仍存 其罪一也 … 旣曰里中同稷 而每於歲初 一不歲拜 其罪三也.”

80) 뒤의 주 106) 참조.

81) 『盧尙樞日記』 3, 1801년 10월 3일, “是日爲見月鶴松稷 率箕樵徒步而往臨… 暫憩看事後 由桃李洞攀崖 登園截項嶺 風氣大肆 臨桃李之金堂菴 大寺則毀破 已至六七年之久.”; 10월 4일, “還到桃李洞上峯 使店村村漢 斷其延香樵軍往來之路 蓋其月鶴松稷內 禁伐之故也.”

82) 『盧尙樞日記』 3, 1802년 11월 22일, “翼兒往月鶴 看稷租收合而還.”

83) 『盧尙樞日記』 3, 1802년 9월 2일, “率翼箕兩兒及文玉曾吉兩稚 往月項水鐵店村 講月鶴松契會 築石階于守義洞下瀑布下 卽書堂基也 爲先始基址而夕還.”

84) 『盧尙樞日記』 4, 1816년 11월 2일, “余率守門兒及壁姪與必曉 往參月壑洞會夕還.”

85) 김성우의 논문(2010) 274~276쪽에도 백운동에서 동회, 송계 등 하민들과의 여러 결사활동을 주도하고 있던 사실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다.



기 이전인 1802년부터이다.<sup>86)</sup> 아마 별업조성을 엄두에 두고 미리부터 이곳의 주민들과 교통하고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 위쪽에 인접한 백련동의 송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이곳에서도 동회에서 송계 문제를 다루기도 했지만, 동계와 이전부터 존재한 송계는 구별되어 별도로 기능하고 있었다.<sup>87)</sup> 白雲洞上里洞稷案 座目이 수정되는 것과 범금자에 대한 처벌, 송계 산직 교체도 마찬가지로였다.<sup>88)</sup> 그는 인근 靑雲洞의 松稷會에도 참여하여 특정 가문이 이 송계에 제기하는 산송문제에 대해 이 모임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sup>89)</sup>

이처럼 그는 자신 가문의 선산에 대한 금양활동 이외에 자신이 사는 동네 및 간접적 관련이 있는 동네의 금양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이행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이런 활동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일반 서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측면도 일부나마 있었다. 생곡동의 동계가 하계(하민)들에 의해 끌려간다고 비판하면서 그 마을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월학송계나 백운동 송계에서처럼 자신의 이해관계가 크게 침해당하지 않는 한에서 마을 주민들의 입장도 서로 보호하려는 입장도 내보이고 있었다.

86) 『盧尙樞日記』 3, 1802년 11월 18일, “昨日翼兒(翼燁) 往見白雲洞松稷會 今日乃還云.”; 1803년 3월 13일, “今日白雲洞松稷會 珽侄代送.”

87) 『盧尙樞日記』 4, 1814년 11월 19일, “是日行白雲洞會 集松稷議 … 余留別業.”

88) 『盧尙樞日記』 4, 1814년 11월 21일, “余留別業 修正白雲洞上里洞稷案座目 并十一戶也.”; 윤3월 14일, “余亦以明日家役爲始 故因向白雲洞 是朝決答各房負木漢 各十五度 差出松稷山直 以贊元僧還差.”

89) 『盧尙樞日記』 4, 1825년 11월 22일, “是日大谷鄭寬默來見言 厥父既以入葬 則四山可以禁護云云 余答曰 禁護則當然 而此是靑雲洞松稷幅圓中 而李氏趙氏墓阡 則其終未知 而詳確爲之可也云云.”; 11월 23일, “今日朝後 往靑雲洞松稷會 暮反面 而果於稷會 鄭君發四山之說 李趙兩君大言不義事云云 則鄭君見敗而歸云.”

## V. 封山 지정을 통한 금양활동

그의 금양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1786년 武兼으로서 왕에게 자신의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산을 태워 밭을 개간하는 것은 곤궁한 백성이 이익을 얻는 한 가지 일입니다. 경상도로 말하면, 산악이 험준하고 온갖 川이 합류하니, 땅이 낮고 밭이 좋은 곳은 모두 강변의 긴 갯벌과 산골짜기의 개간한 田野입니다. 洛東江의 水源은 太白山에서 나와 동쪽으로 6, 7백 리를 흘러서 강변 일대가 모두 좋은 전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화전을 개간하도록 허락한 뒤로 을축년(1745)에 두 차례 큰 홍수가 나는 바람에 산골짜기가 무너져서 流沙가 크게 이르러 긴 강이 모두 수심이 얕아졌고, 갯벌이 쓸려 나가 良田이 모래로 덮여서 그 밭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거의 태반에 이르렀으며, 산골짜기의 개간한 전야는 川反되고 모래로 뒤덮여서 농사의 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더구나 산골 백성과 갯가 백성 중에 익사자가 생긴 집이 몇백 호나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이니, 이것은 모두 산을 태워 전토를 개간한 까닭입니다.---게다가 여러 해를 계속해 산을 태워서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백성으로 하여금 죽은 이를 장사 지내게 하는 도리 또한 이미 소홀해졌습니다. 이 몇 가지 일은 한 도의 큰 폐단입니다.<sup>90)</sup>

그가 언급한 것은 산을 태워 화전을 일구는 것으로 인해 비가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 농토가 잠기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나무가 없어 장사지낼 때 관을 짜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에는 금양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이 전제되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곳은 封山으로 지정하여 금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 하에서 그는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사는 먼 지역에서라도 봉산 지정을 관철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옮겨와 살고 있던 도개면은 華山과 冷山을 접하고 있었고, 이곳 주민

90) 『日省錄』 정조 10년 1월 22일.

들은 이 산의 수목을 보호하면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770년대 초 낙동강 건너 생곡동 주민들이 화산의 소나무를 남벌하면서 도개면의 상하 주민과 생곡동 주민간에 격렬한 소송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도개면 주민이 소송에서 패배하자, 생곡동 초군들이 계속 화산 수목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본면에서 운영하던 나룻배를 팔아버렸다고 한다.<sup>91)</sup>

『노상추일기』의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 상황을 좀더 소상하게 알 수 있다. 즉 원래 화산과 냉산에는 수목이 울창해서 주민에게 주는 이익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중간에 주인이 있는 특정 私養山에 대해 해당 주인이 생곡 초군에게 송추를 벌채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후 邑底의 東西內面 초군들이 작당하여 금양을 무시하고 벌채하였고, 관장도 금호하는 데 별로 뜻을 두지 않아, 5년 사이에 화산의 남쪽과 냉산의 북쪽 사면은 민둥이가 되었고 한 골짜기에 산사태가 난 곳이 수십 곳이나 된다고 하였다.<sup>92)</sup>

갑산부 진동권관을 지내다 고향에 돌아온 1790년에 그는 도개면 다곡동 골짜기를 돌아보면서 화산냉산이 민둥산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sup>93)</sup> 이후 삭주부사를 지내고 5년만에 고향에 돌아온 1795년에도 산을 둘러보고 산과 골짜기가 헐벗어 산사태가 일어나고 개천의 물길이 달라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이것은 柴政이 부족하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화산냉산을 다시 금양할 목적으로 山監과 山直을 신칙하여 초군들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91) 『盧尙樞日記』 3, 1802년 10월 3일, “本面太祖津船 自古一面設置者 而三十年前 因省谷洞人犯斫華山松木 本面上下民人 血戰相訟 本面見敗 自此以後 本面賣其津船 欲絕樵軍之勝乘長驅.”

92) 『盧尙樞日記』 2, 1795년 4월 22일, “五年之間 山壑換面 華陽冷陰 濯濯無松 沙汰一谷數十處 通以計之 不知其數 川溪爲流汰所覆 其廣其平 川水伏流 今爲乾川 水根無恃 山下生利 自此絕矣 追憶二十餘年往事 華冷松雜木 鬱密成林 民利甚多 而本面之長養 已至數百年 他面他邑莫敢投足 文券成軸 中間有主山 主人乃許自家之松楸於省谷之樵軍 自此以後 邑底東西內樵軍 引黨冒禁 官長亦不爲使之禁護 一面禁養 混被池魚之殃.”

93) 『盧尙樞日記』 2, 1790년 5월 10일, “四年之間 山川換面 十里長谷 華冷兩嶽 童濯無餘 此乃世變所關 歎恨何爲.”

다른 면, 다른 고을이 이를 심상하게 여겨 출입에 장애가 없어서 주인이 있는 산이라도 수호의 방책을 잃어버려 마침내는 모두 민둥산이 되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하였다.<sup>94)</sup>

그래서 환향 직후 그는 화산냉산의 금송을 위해 면임에게 분부해 각 마을의 산직을 차출해서 관에 보고하게 하고, 이후 다시 도개리에서 面會를 열어 각 마을마다 산직을 2명씩으로 늘려 차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곡동과 읍저 동서내면의 초군들이 10여 일간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sup>95)</sup> 1802년에 와서도 본면의 津船 成造 문제로 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華山의 一年草를 베는 것을 각 리에 허용하고 그 대가를 매년 납부하는 것을 약속하는 문권을 작성하고 회의를 끝냈다고 한다.<sup>96)</sup>

그러나 이런 금양활동은 주위에서 침해당하기 쉬웠다. 노상추는 화산냉산이 봉산으로 지정되면 그만큼 금양활동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여기고, 1825년부터는 고을과 감영에 양 산의 봉산지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 해 8월 21일 노상추는 수령을 만나 양 산을 봉산으로 지정해서 公廩나 船材木 등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이에 수령은 문장을 올리라고 하였다.<sup>97)</sup> 24일 양 산 이외에 도리산도 포함하여 선재목용 봉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문장을 올리자, 수령은 감영에 보고하여 좋은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하였다.<sup>98)</sup>

94) 『盧尙樞日記』 2, 1795년 4월 6일, “五年歸家 山壑換面 童濯之餘 崩汰兼至 川流改路 居民失利 柴政不足 議藩籬無奈何 必切目前之急 發令禁松之節 使彼華冷兩山 復爲禁養之計 申飭山監山直 禁斷樵軍之出入 三十年來他面他邑 視若尋常 出入無碍者 有主之山 而失其守護之方 終至於盡濯之境 良可嘆也.”

95) 『盧尙樞日記』 2, 1795년 4월 21일, “是日一面會于桃開里 議華冷兩山禁松 省谷東西內樵軍 十餘日間不得橫行者 自余還家以後 分付面任 報官差出各里山直 又於今日 自面中加出各里山直 二名式差定云 珽侄往參面會 季君還文洞.”

96) 『盧尙樞日記』 3, 1802년 11월 20일, “是日 以本面津船成造事 面會于桃開 桃開上尊位朴汝文漢柱 通文各里 汝文來請往會 故往焉 … 華山一年草 許與各里 隨所願願納定 每年例納之意 成給文券後 罷會.”

97) 『盧尙樞日記』 4, 1825년 8월 21일, “入衙見主倅 說罷伐椽過數事 乃言封彼華山冷山 定號分廩船材木公用封山事 答曰 唯唯 退呈文狀云云.”

98) 『盧尙樞日記』 4, 1825년 8월 25일, “昨日明壽與升燁 以華冷桃李山船材木封山一款

그러나 이런 조치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지연되다가 다음 해에 가서 마무리된다. 1826년 4월 아전들이 화산·냉산을 봉산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첩보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감영에 올리자, 감영에서는 화산에 접한 尙州比安軍威에 移文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절목에 답인해서 내려보내겠다는 대답이 왔다.<sup>99)</sup> 이후 6월에 들어 영문으로부터 절목이 내려와서 노상추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려 하였다.<sup>100)</sup>

그런데 난데없이 향교 齋有司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향교가 화산에서 세草에 나섰는데, 이를 노상추의 노비가 막았다고 관아에 고소했고, 관아에서는 노비를 잡아들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상추는 재유사의 무고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營·邑節目 책자 2권을 작청에 보냈고 향교 首奴에게도 패자를 보내 향교에 경고하였다.<sup>101)</sup> 7월 말경에는 封山都監이 찾아와 주민들에게 계를 조직해 禁山하게 하고 매년 봄가을에 한 차례씩 예조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전령 내용을 보고하였다. 8월에 들어서는 봉산에서 ‘賣草稷房’이라 해서 이 부분을 떼어서 향교에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산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sup>102)</sup>

그런 중에도 도개면에서는 면회를 열어 화산·냉산의 금양을 위한 계를 조

呈于官 則題曰 官於此邑諸山之童濯 每爲憂歎 欲求好道理 今見狀辭 可謂先獲我心 當報營封山 以爲來頭久遠之術向事云云 封山果成 則私養山所幸莫大焉.”

99) 『盧尙樞日記』 4, 1826년 4월 4일, “以華冷山封山事 作廳公兄南之溫·姜時牧 成報草告目來納.”; 5월 8일, “冒雨渡津入府 坐作廳問華冷封山報營事 題音內 移文尙州比安軍威三邑後 當踏印於節目下送 更爲報來 則踏印下送 故姑爲留置云云 三邑移文 則回移齊到而方爲更報云云.”

100) 『盧尙樞日記』 4, 1826년 6월 5일, “又見戶長朴思翊告目 封山事 自營門節目成貼下來云.”

101) 『盧尙樞日記』 4, 1826년 6월 23일, “是日自官傳令 將校差使曰 校中齋有司稟報內 校中刈草 盧朔州家奴子禁塞云 奴子結縛捉來云云 故未詳官怒之由 而入送世元.”; 6월 25일, “發牌作廳 入送營邑節目冊子兩件 又發牌于校中首奴曰 齋有司之構虛誣告 使無罪之人受罪者不義也 此等人物不可置之莫重之所 斯速鳴鼓滌堂可也云云.”

102) 『盧尙樞日記』 4, 1826년 7월 25일, “封山都監金致洙來現…傳令 則使民人結稷禁山之意爲言 一年春秋一次式出令刈草云云 此是萬不成說也.”; 8월 4일, “入府主倅稱病不見 心有還愧而然也 聞戶長朴思翊所告 則禁山事 日前以校中稷房賣草 除出校中 以其餘禁山之意 傳令出送於都監官處云云.”

직하고 계의 기금 60량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별로 할당하였다. 노상추가 사는 화림동이 40량으로 가장 많이 출연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각 마을에 적절히 배당하였다.<sup>103)</sup>

이후 노상추는 아들 箕輝이 興德縣監으로 부임하자 1826년 9월 27일부터 1827년 2월 29일까지는 아들의 치소로 가서 한동안 머물다 돌아왔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던 1827년 1월 선산부 향교 사림들이 향교와 서원을 위해 화산냉산을 향교의 봉산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향교의 화재로 菁莪樓東西齋 제가문서서책 등이 모두 소실되었고 양 산을 봉산으로 지정하려는 문건도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sup>104)</sup>

이후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양 산의 금양 활동에 대한 언급도 이후 그의 일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1828년 6월 화산냉산 골짜기를 비롯한 곳곳이 비로 인해 산사태가 나고 주민이 피해를 입자,<sup>105)</sup> 노상추는 매우 분개하였다.

그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향교의 농간때문이었다고 보았다. 즉 도개면의 양 산에 대한 금양활동은 백여 년 넘게 수행해 왔고 그동안 관곽을 짚 수 있는 이름드리 재목들이 산에 뿔뿔하게 들어찼었다고 한다. 그런데 생곡 초군들이 작난을 벌이고 금산활동이 무산되었을 때나 丹丘(상주 지역)比安軍威의 주민들이 양 산을 범작하는 26년 동안에 한 번도 향교가 나서서 항의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근년에 향교의 李觀普란 자가 문권을 위조해 康熙년간(1662-1722)에 작성된 立案이라 내세우며 양 산에 대한 관리권

---

103) 『盧尙樞日記』 4, 1826년 8월 22일, “是日行面會 … 禁山事 一面設稷出物 則華林出四十金 自當以六十金布于各洞 桃開十三兩 愚谷十一兩 新村一兩五錢 葛峴一兩五錢 靑雲洞四兩 大菴里四兩 白雲洞三兩 水鐵里七兩 多項里□兩 新基□兩 石峴□□ 龍山里□兩.”

104) 『盧尙樞日記』 4, 1827년 1월 15일, “未午疇孫 率崔三 自鄉來面 … 吾鄉事變 心甚叵測 所謂鄉校士林 爲此校院 以華冷封山 圖成鄉校之封山 不顧義理 專以利貨爲主 紛紜 數朔之間 校中先以失火 菁莪樓東西齋 祭器文書書冊等物 盡入於燒燼中 華冷山圖出封山之文 亦入於燒燼 人事 可以知之矣.”

105) 『盧尙樞日記』 4, 1828년 6월 23일, 24일, 7월 10일 기사 참조.

을 빼앗으려 하였다. 즉 옛날 校奴 介山이란 자가 多項谷(月項)에 살면서 산에 논을 일구어 경작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토지는 ‘校屯’이라 해서 향교가 관리하는 토지가 되었고, 이를 매개로 더 확장하여 양 산에 대해 賣草稷房을 설정하고 해마다 산의 초목을 이용하는 산하 근처의 주민에게 돈을 거두어 산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sup>106)</sup>

이에 노상추는 다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시작한다. 7월 11일 도개면 면회가 열려 화산냉산의 산사태 문제를 논의하고 관아에 정소하여, 작청에 면민의 금양을 보장하는 문건을 작성하라는 수령의 지시가 내려졌다.<sup>107)</sup> 또 각 동 감관과 산직을 선출해서 관에 보고하라는 수령의 명령이 내려져 이를 위해 면회가 열렸고, 그 후에도 면회가 다시 열려 양 산 금양과 관련된 面中座目과 完議節目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sup>108)</sup> 수령의 압력으로 인해 향교에서도 매초계방을 혁파하고 앞으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품목이 올려진 것으로 보인다.<sup>109)</sup>

그러나 향교의 저항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수령은 8월에 들어 이 사건의 전말을 감영에 보고하였고, 이에 감영에서는 8월 말경

106) 『盧尙樞日記』 4, 1828년 7월 2일: “丙戌春 與府伯李亨會相議 乃報巡營 使華冷兩山 成出營邑節目 而校中李觀善 潛出校中立案 以康熙年間云 則實僞造也 本面全當禁養 百有餘年 其間連抱棺槨之材 滿山簇立 而省谷樵軍作亂 禁山乃破 校中本無一言 丹丘比安軍威之民 犯斫二十六年 校中亦無一言 … 潛出立案 僞造成券 多項谷內校屯爲名者 古有校奴介山爲名者 居此洞作山番而身死 自校中次知其番 因名校屯 厥后加耕者 次次校中收稅 故因其勢而未稍僞成立案故也 余於辛丑年間 亦出李桃洞立案 而未聞校中立案 自近年乃成山下近面賣草稷房 年年收錢 因作利窟 李觀善作亂者此也 未及十年 山崩之變乃出 校屯名色 幾乎無之 此非天道乎.”

107) 『盧尙樞日記』 4, 1828년 7월 11일, “面中人 以華冷兩山崩頽事 方爲呈訴事面會 興德兒往參焉.”; 7월 12일, “聞昨日面會 呈狀之後 自官特許所請 方爲崩山 使作聽成文卷云 民事幸矣.”

108) 『盧尙樞日記』 4, 1828년 7월 13일, “面中 自官各洞監官山直擇人知名報官事 又請會 興德兒又往參 第二孫明瓊往參.”; 7월 20일, “是日面中行面會 此則華冷兩山崩頽事 自官傳令本面 乃成面中座目 以爲面座 而下帖校中 董罷賣草稷房云云者也 面中果成座目完議節目云.”

109) 『盧尙樞日記』 4, 1828년 7월 15일, “聞校中 乃罷賣草稷房 更勿舉論之意稟日云 邑倅之政 誠各不同 於是乎 始知任官倅之責者 有所重也.”

향교의 주장을 배척하는 입장의 제사를 내려보냈다. 즉 향교의 입안이 위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산사태가 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 변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더구나 입안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校田이 산 아래에 있다 해서 그 산을 향교에 모두 속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절목이 만들어졌으니 여기에 계속 판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감영은 이번 기회에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을의 보고나 민장, 감영의 제사 등을 1본 더 등사하여 해당 마을에 출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sup>1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향교 유생들은 향회를 열어 양 산의 금양 조치에 대한 저항하는 정장을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교 유생들은 다시 이 문제를 감영에 정소하였지만, 이것도 문전박대당하는 처지였다. 오히려 수령의 의견을 거슬러 수령의 진노를 샀다는 이유로 소장의 명단에 들었던 자들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령은 절목을 만들어 해당 면에 보냈다.<sup>111)</sup>

10월에 들어 도개면에서는 양 산의 산직과 감관이 모여 회의를 하고 도감관 金性佑가 10개 마을 감관·산직을 이끌고 노상추를 알현하고 巡山 일정을 정하고 순산을 잘 이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sup>112)</sup> 특히 노상추의 별업이 있던 백운동 골짜기에서는 3명씩 1패를 이루고 백운동은 3패, 대둔리는 5패, 청운동은 8패를 구성하여 谷內·谷外를 1일 1패씩 나누어 순산한다는 일

110) 『盧尙樞日記』 4, 1828년 8월 28일, “華冷山封山事 官報營題 昨暮出來云 而觀其題辭 乃曰 藉使本山 眞爲校中立案之舊物 今於土崩沙剝 害及民村之後 固宜有變通之道是去等 況其立案 本非舊物文券 係是新創 何可以校田之在其下并屬其山乎 本官處決 無復餘蘊是矣 該民之更呈於營門者 其意在於猶有後慮 并藉營邑之力也 節目旣成 不必贅續 以今番邑報民狀及營題 更謄一本 成貼出給於該洞 宜當事云 眞所謂永久文券也 營邑今番處決 至公無私者也 爲善民萬世之澤也.”

111) 『盧尙樞日記』 4, 1828년 9월 14일, “聞校儒 以華冷山事鄉會 定儒生呈狀 則逐出見敗 方擬呈議送云.”; 9월 27일, “聞校儒 以華冷山事 呈議送 而以白狀退斥云 而狀中名帖人 方欲割名而紛 官意發怒故也云 自官成節目出送云 從此完成文案也.”

112) 『盧尙樞日記』 4, 1828년 10월 1일, “是日華冷兩山山直監官聚會 都監官金性佑 率十洞監官山直 來待聽分付巡山約束 初三日都巡山 其次日各洞鱗次逐日巡山 定式而罷.”



정을 정하기도 하였다.<sup>113)</sup>

이처럼 다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노상추의 소망은 결실을 어느 정도 보게 된 것 같다. 그가 양 산에 대한 분산지정에 집착했던 것은 그것이 사양산 금양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sup>114)</sup>

## VI. 맺음말

무과에 급제하고 이후 삭주부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던 노상추는 고향을 떠나 서울이나 임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잠시 고향에 돌아와 머무는 동안에는 분산수호나 문중 일 이외에 금양활동에도 상당한 관심을 쏟았다. 특히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고향에 안착한 19세기 초반의 노년기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금양활동을 전개한다. 그런데 노상추와 그의 부친은 선산부 내의 여러 마을로 옮겨 거주했던 인연으로 인해 해당 마을의 금양 문제에도 간여하게 된다. 게다가 분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분산수호나 분산의 산림을 금양하는 활동도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조선후기 사족 가문의 분산 영역에 대한 침범이나 금양처의 무단작별이 광범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노상추 가문에서도 다른 가문과의 산송이 빈발하였다. 노상추는 분산 침범을 막기 위해 각 분산에 산직을 두어 묘와 금양목을 보호하려 했다. 노상추의 분산에 대한 적극적인 금양활동은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친의 묘가 자리한 백련동에 대한 금양활동이다. 노상추는 관아에 정소하여 이곳의 금양권을 인정하는 입지를 받아냈다. 이후 동생, 조카 및 주위 사찰의 승려들과 더불어 금양계목과 완의를 작성하고 공동기금도 마련하였다. 노상추는 금양을 위해 선산 주위나

113) 『盧尙樞日記』 4, 1828년 11월 24일, “華山巡山一款 定以白雲洞每牌 三名式爲一牌 合爲三牌 大茈里則合爲五牌 靑雲洞則合作八牌 谷內谷外 一日一牌式 合兩牌巡山 日暮捲巡 納牌于華棣堂 發巡日 逐日受牌而巡山 罷巡而納牌定式.”

114) 앞의 주 98) 참조.

집 부근에 수목이나 그 씨앗을 심어 금양목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는 분산에서 금양한 수목이나 수초를 문중 사업이나 자신의 소용처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노상추는 마을 단위의 여러 금양조직에도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다. 그 중 하나가 생곡동의 금양활동이다. 그는 생곡동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일찍부터 생곡동에 깊이 관련을 맺고 동회에 참여하였다. 번번히 그 조직에서 배제되기는 했지만,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생곡동과 관련된 금양활동에 간여하고 있었다. 그는 도개면 수철점촌도리동수의동을 아우르는 형태의 송계였던 월학송계 및 그가 별업을 조성한 백운동의 송계에도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다. 면 단위의 금양활동에도 간여하고 있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 및 간접적 관련이 있는 동네의 금양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금양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사는 면 지역에 접한 華山과 冷山이라도 봉산으로 지정하여 금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양 산의 수목을 보호하면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770년대 초 낙동강 건너 생곡동 주민들이 화산의 소나무를 남벌하면서 도개면 주민과 생곡동 주민 간에 격렬한 소송이 전개되었다. 이후 읍저의 동서내리 초군들이 작당하여 수목을 남벌하였고 관장도 이를 금호하는 데 별로 뜻을 두지 않아, 화산의 남쪽과 냉산의 북쪽 사면은 민둥이가 되었고, 큰 비가 오자 한 골짜기의 여러 곳에 산사태가 났다.

그는 양 산의 금송을 위해 각 마을의 산직을 차출해서 관에 보고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이런 금양활동은 주위에서 침해당하기 쉬웠다. 노상추는 화산과 냉산이 봉산으로 지정되면 그만큼 보호활동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여기고, 1825년부터는 양 산의 봉산지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 해 8월 노상추는 수령을 만나 설득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정소하게 하였다.

1826년 4월 관련된 첩보 문건이 작성되어 감영에 올려지자, 감영에서는

인근 고을인 상주비안군위에 이문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6월 절목을 만들어 내려보냈다. 그런데 난데없이 향교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봉산에서 ‘매초계방’이라 해서 이 부분을 떼어서 향교에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산활동을 하라는 관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후 향교 사립들이 양 산을 향교의 봉산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다가 1828년 6월 화산냉산 골짜기를 비롯한 곳곳이 비로 인해 산사태가 나고 주민이 피해를 입자, 노상추는 다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시작한다. 도개면 면민들이 관아에 정소하여, 관에서 면민의 금양을 보장하는 문건이 내려졌다. 관의 명령에 따라 각 동 감관과 산직을 선출하였고, 양 산 금양과 관련된 면중좌목과 완와절목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향교 유생들이 이에 저항하는 정장을 올리고 감영에도 정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령은 절목을 만들어 해당 면에 보냈다. 노상추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상추의 금양활동은 여러 부문에 걸쳐 나타났고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가 문관이 아닌 무관이라는 지위의 열등성때문에 자기 문중의 체모와 경제적 지위를 드높이는 데 더욱더 관심을 쏟는 모습의 한 형태가 적극적인 금양활동으로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따라서 이런 금양활동의 모습을 모든 사족에게 그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일반 사족들이 금양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노상추의 금양활동이 자신과 가문을 위한 것이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일반 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형태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분석은 초군과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문제와도 관련지어 다음의 글로 미루기로 하겠다.

※ 이 논문은 2017년 10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日省錄』

『戶口總數』(서울대 奎章閣 영인본, 1996)

『盧尙樞日記』(國史編纂委員會 정서본, 2005).

『寒泉洞案』, 『禁林同苦洞案』(이상 의령 자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6, 1979.

김선경,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所有權의 실태」 『東方學志』 77·78, 연대국학연구  
원, 1993.

김선경, 「17,18세기 양반층의 山林川澤 私占과 運營」 『역사연구』 7, 역사학연구  
소, 2000.

김경숙, 「조선후기 私養山의 偷斫과 공동체적 대응」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  
문당, 2003.

金景淑, 「조선후기 山訟과 上言擊錚—盧尙樞家와 朴春魯家の 소송을 중심으로」 『  
古文書研究』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8.


문숙자, 「조선후기 兩班의 일상과 家族内外의 남녀관계—盧尙樞의 일기를 중심으  
로」 『고문서연구』 28, 2006.

정해은, 「조선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盧尙樞日記』를 중심으로」 『한국  
사연구』 143, 2008.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무관 盧尙樞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너머북스, 2009.

김성우, 「19세기 초반 盧尙樞의 백운동 別業 구성과 경영」 『역사와 현실』 78,  
2010.

이정수, 「조선후기 盧尙樞家の 재산변동과 농업경영」 『지역과 역사』 29, 부경역  
사연구소, 2011.

 Abstract

## Geumyang(禁養: Forest protection) Activity of Military Subject No-Sangchu(盧尙樞) of the 18th and 19th Century

Kim, Jun-hyeong

This research investigated Geumyang activity of No-Sangchu in various aspects, who was a military subject from Seonsangun(善山郡)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y, based on 『No-Sangchu's diary』, which recorded his life. No-Sangchu, who was engaged in several public posts such as Sakjubusa, etc., normally resided in Seoul or the place of appointment out of his hometown, however he paid considerable attention to Geumyang activity besides Bunsan(墳山) protection or clan affairs while he was staying at his hometown for a while. However, due to the occasion that he stayed in various villages with his father, he was involved in Geumyang matter of the relevant village. Moreover, since Bunsan was scattered over several places, Bunsan protection or Geumyang activity of the forest of Bunsan appeared through several places.

No-Sangchu intended to protect the tombs and Geumyangmok by placing Sanjik(山直) in each Bunsan to prevent invasion of Bunsan. Also, he established Geumyangmok by planting trees or the seeds around Bunsan or the house for Geumyang. He accumulated wealth by using for his use or selling the trees or the water plants planted at

Bunsan.

No-Sangchu was actively involved in several Geumyang organizations in village unit. He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Wolhaksonggye(松契) and Baegundong songgye besides Geumyang activity of Saenggokdong. Also, he participated in Geumyang activity in Myeon(面) unit. This way, he tried to push on his position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village Geumyang activity with interest for his village and indirectly related village.

His Geumyang activity did not stop at this. He believed that Geumyang should be enhanced by designating even Hwasan(華山) and Naengsan(冷山) nearby Myeon region where he lived as Bongsan(封山). Therefore, He regularly started the activity for designation of Bongsan in two mountains since 1825. In August of that year, he enacted and transmitted Jeolmok of permission on this from Gamyoung in June, 1826 by persuading the village leader in August of that year and making him report it. Nevertheless, it was about to be stopped since Hyanggyo opposed it all of a sudden. Meanwhile, as the residents were damaged by the landslide due to he rain in various places including Hwasan·Naengsan valley in June, 1828,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is matter again. As Myeon residents officially suggested the government office, an official paper was handed down by the government guaranteeing Geumyang of Myeon residents. Here, Wanui(完議), Jeolmok(節目) etc. were prepared related to Geumyang in two mountains. Eventually, No-Sangchu's efforts got results.

**key words** : No-Sangchu(盧尙樞), Geumyang(禁養) activity, Geumyang in each Bunsan, Geumyang organizations in village unit, Activity for designation of Bongsan

